KOSHA GUIDE

C - 86 - 2018

- (바) 개·보수 공사시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
- (사) 무너짐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건물, 구조물 현황에 관한 사항
- (아) 구조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반침하에 관한 사항
- (자) 지하 매설물과 지하수 흐름에 관한 사항
- (차) 건설현장 내 설비나 장비설치에 관한 사항
- (카) 건설현장 내에 석면이나 화학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의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
- (타) 기타 건설공사중 근로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련 법 령 등에서 정하는 내용

5-2. 시공준비단계(착공 등)

- (1)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, 공사계약일반조건, 공사계약특수 조건, 계약서, 설계도서, 내역서 등에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사항에 대하여 건설안전보건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설안전보건을 고려한 시공조건 등을 검토하여 계약을 발주자와 체결하여야 한다.
- (2) 사업주는 건설현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상에 명시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.
 -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제14조 관리감독자, 제18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
- (3)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(4) 사업주는 대상공사인 경우 공사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,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.